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7가단113358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원

담당변호사 신현식

피 고 1. B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수영

3. D

변론 종결 2019. 7. 24.

판결 선고 2019. 10. 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에게, 1 피고 B, C은 포천시 E 전 724㎡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5, 14, 17,

16,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 지상에 설치된 돌담을, 피고 D은 별지 제1도면 표시 13, 12, 11, 19, 18,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 지상에 설치된 돌담을 각 철거하고 위 'ㄴ' 및 '디'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2 피고 B, C은 연대하여 1,852,105원, 피고 D은 2,057,89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D은 원고에게, 1 포천시 E 전 724㎡ 중 별지 제2도면 표시14, 4, 17, 16, 15, 14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 지상 돌담을 철거하고 위 'ㄴ'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2 823,1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천시 E 전 724㎡(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C은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포천시 F 대 663㎡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으며, 피고 D은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포천시 G 대 1,218㎡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4, 4, 17, 16, 15,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에는 피고 D 소유의 석축이 경계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다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포천지사에 대한 2018. 8.21.자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적법한 권원 없이 피고들 소유 토지에 인접한 원고 소유 토지 중, 피고B, C은 별지 제1도면

표시 선내 'ㄴ' 부분에, 피고 D은 별지 제1도면 표시 선내 'ㅂ' 부분에 각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 B, C은 별지 제1도면 표시 선내 'ㄴ' 부분에 설치된 석축을, 피고 D은 별지 제1도면 표시 선내 '디' 부분에 설치된 석축을 각 철거하고, 위 'ㄴ' 및 'ㅂ'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석축철거 이후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피고 B, C은 연대하여 1,852,105원을, 피고 D은 2,057,894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포천지사에 대한 2017. 8. 23.자 측량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석축이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가사 이 사건 석축이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 3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석축은 원고 소유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설치 이후에 토지를 승계취득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석축에 대하여 방해배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런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가 신청한 한국국토정보공사 포천지사의 2017. 8. 23.자 감정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D이 신청한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포천지사에 대한 2018. 8. 21.자 측량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 D은 적법한 권원 없이 원고소유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선내 'ㄴ' 부분에 석축을 설치하여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별지 제2도면 표시 선내 '나' 부분에 설치된 석축을 철거하고, 위 '나'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석축 철거 이후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823,1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석축은 원고 소유 토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 D이 이 사건 석축을 설치한 것은 아닌 사실이 인정되고, 그 위치와 형상, 주변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위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로서 토지와 분리하는 데 작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고 토사의 붕괴로 인하여 원고 소유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손상될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석축은 원고 소유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설치 이후에 토지를 승계취득한 피고 D에게 이 사건 석축에 대하여 방해배제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49202 판결 참조),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